

『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중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3호의
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규모를 시·군조례로
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

3. 주요내용

-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규모변경(안 제2조)
 -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
및 일반음식점
 - 영업장 면적 125㎡이상 → 250㎡이상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 관리의
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제9조의2 제2호로 개정하여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서

-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영업장면적 125m²이상에서 250m² 이상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참고로 관내의 125m²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1,553개소이며, 250m²이상 업소는 245개소임.